

本會記事

理事會

第24回 理事會 1967. 5. 25 15:0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全員 參席裡에 開催

報告事項

- 1) 建築技術講習會의 結果報告가 有았음.

決議事項

- 1) 事務所 規制案 保留.

2) 業務의 不誠實 및 免許貸與者 臨時措置方案은 前番 理事會에서 議決한대로 곧 實踐하도록 各支部에 示達하도록 할것.

3) 設計用役에 對한 會員 추천 지향; 企劃委員會에서 會員추천을 評하는 方向으로 決議된데 對하여 추천 評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必要 不可避할 時에만理事 全員이 參席하여 만장일치로 추천하도록 가결 된 것에 對하여 추천하자는 提案을 만장일치로 가결.

4) 倫理委員會委員을 서울 6名 釜山 1名으로 改編키로 決議된데 對하여는 會員으로만 構成할 경우는 公正한 판결을 얻기 어려울 뿐더러 他團體의 例에도 欲는 일이나 企劃委員會와 總務理事와 姜奉辰理事가 會同하여서 選出改編하도록 一任하기로 가결함.

5) 稅率對策에 關한 件

稅務當局에 早速한 期日內에 稅率引下 建議書를 提出하도록 하고 對策委員中 張起仁 會長을 姜奉辰理事로 對策委員을 交체키로 可決.

第25回 理事會 1967. 6. 2. 14:30 協會 事務室에서
多數理事 參席裡에 開催

決議事項

- 1) 事務長會議를 6월 11일에 開催키로 함.

2) 日本人建築學會一行 來韓에 關한 件에 있어서 日本建築學會一行이 訪問時 예불교환에 있어서 韓國의 인 物品(土產物)을 贈呈키로 함.

第26回 理事會 1967. 6. 7. 18:3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多數 參席裡에 開催

決議事項

1) 倫理委員을 다음과 같이 改選함. 金東珪, 金鳳善, 裴基瀝, 李明煥, 李喜泰, 康晉參, 林日善 等 7名

2) 工事監理 및 建築土地位向上 및 法改正을 爲하여 第2回 企劃委員會에서 討議하여 決議된 案을 李鍾泰理事로 부터 보고 받고 草案作成委員으로 金源安, 李明

煥, 李奉魯氏 等 3名에게 委嘱하여 草案을 作成토록 함.
第27回 理事會 1967. 6. 12. 15:00 協會 事務室에서
多數理事 參席裡에 開催

報告事項: 會誌 6月號 出版 關於 한 件으로 6月末까지 出版 예정임을 報告.

決議事項

1) 釜山市 所在 建物의 時價鑑定依賴는 釜山市支部에서 鑑定하도록 移譲하고 釜山市長에 移譲事實을 通知할 것.

2) 今年度會期內에 各支部 監查를 實施토록하고理事 1名과 職員 1名이 1組가 되어 監事하도록 計劃을 作成할 것.

3) 建築土業務報酬基準의 改正案을 修正하여 建設部에 改正案을 提出토록함.

第28回 理事會 1967. 6. 21. 11:30 協會 事務室에서
多數理事 參席裡에 開催

決議事項:

大邱地方檢察廳으로부터 大邱市 所在 青丘大學 本館倒壞事件 原因鑑定 依賴의 件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決議 됨.

① 鑑定員 代表는 張起仁 會長으로 하고 鑑定員으로 安仁模, 裴基瀝으로 決定.

② 調査檢討委員咸性權, 尹張燮 2名 委嘱함.

第29回 理事會 1967. 6. 27. 18:0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全員 參席裡에 開催.

討議事項

1) 慶北支部長이 要請한 金淳赫, 趙子庸에 對한懲戒措置解除의 件은 充分한 調査後 再論키로 함.

決議事項

2) 江原道支部長으로부터 休業中인 黃基禎會員의 會費未納으로 定款 第11條에 依하여 處理할 것을 要請한 것에 對하여 休業中이라도 會員資格이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會費를 納付치 않음은 定款 第11條에 依하여 處理되어야 하므로 會員資格停止(6個月)를 決議.

2) 慶南支部 曹台和會員은 1966年 5月에 加入 後 전혀 會費를 納付치 않으므로 定款 第11條 規定을 適用 除名을 決議함.

3) 青丘大學本館 倒壞事件에 關聯된 崔聖德會員은 無免許者인 金仁鎬가 作成한 設計圖書를 自己가 作成한 것 처럼하여 許可書類를 作成함으로서 慶北知事로부터 登錄取消가 되었으므로 除名키로 함.

4) 會誌의 印刷는 編輯完了 後 理事會에 報告承認을 받도록 함.

5) 會員名簿 8月中에 發行토록함.

6) 6月分 收支決算 및 7月分 豊算書를 채택함.

7) 稅率對策에 關해서 建議書를 關係處에 提出하도록 하되 建議書의 草案作成을 朴永晚理事, 車景淳理事, 姜奉辰理事에게 一任함.

8) 建築士業務報酬基準 改正案을 討議하고 再議토록 함.

第30回 理事會 1967. 7. 10. 15:0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多數 參席裡에 開催

決議事項

1) 青丘大學 倒壞原因 鑑定에 對하여 大邱地方檢察廳의 回信내용을 보고 받고 早速히 鑑定을 完了토록 함.

2) 第29回 理事會에서 넘어온 建築士業務 報酬基準 改正案을 심의, 設計料率表中 各種別의 高額工事費의 料率이 너무적게 되어 있으므로 修正토록 함.

第31回 理事會 1967. 7. 20 17:0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全員 參席裡에 開催

報告事項

1) 展示會 出品資材 施賞準備에 關해서 大統領賞, 國務總理賞, 建設部長官賞 만이 賞狀 이 안나오고 其他부처의 賞狀은 全部 받아 놓았다는 李尙薰 事務處長의 報告가 있었음.

2) 支部業務實態調查에 關하여 忠南北兩支部는 事務整理가 大體로 良好하며 提川에서는 會員을 접촉하지 못하였다는 朴永晚理事의 報告가 있었으며 全南北支部와 京畿道, 江原道 支部에 對한 報告가 있었음.

決議事項

1) 會員名簿를 8月中에 60,000원 한도 내에서 出版하도록 決議

2) 金淳赫의 懲戒件에 關해서 本人으로부터 懲戒解除에 關한 請願書가 提出되 있는데 請願事實의 真否를 調査 처리키로함.

3) 1968年度 豈算에 關하여 擔當理事 別로 具體의 豈算案을 作成하여 企劃委員會에서 一次 討議토록 결의.

4) 서울市支部 業務實態調查를 理事 3名, 事務處長과 總務部長이 擔當하여 實施토록 함.

企劃委員會

第2回 企劃委員會가 1967年 6月 2日(金) 16:00時에 協會 事務室에서 委員長 李鍾泰理事, 委員 金東珪, 衷基灘, 李明煥, 宋寬植, 柳光澤, 李圭福, 李春相, 崔昌奎, 申鉉壽, 李泰魯氏 等이 出席하고 張起仁會長 姜奉辰, 安仁模 兩理事가 參席하고 案件으로 建築士의 法的地位 問題와 工事監理의 二件을 다루 었다.

1) 建築士의 法的地位에 關한 件

委員長 李鍾泰理事; 建築士와 建設技術者間에 關한 것으로서 建設業法에 依하면 他法令에 의거 合格된 者

는 建設技術者의 試驗에 一部 또는 全部를 免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一級建築士는 建設技術者의 甲類免許를 自動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터인데 建設部의 技術用役 1位代價表의 1級建築士의 日當單價를 乙類建築技術者와 同一하게 策定됨으로서 이러한 모순점을 是正하도록 하는 方法을 討議하여 주십시오.

姜奉辰理事; 이 문제는 理事會에서도 數次論議된 바 있습니다. 建設部에서 策定한 日當 單價는 國土調查用役의 대개가 土木工事로서 土木技術者를 相對로 策定된 것 같은데 最小限 甲類建設技術者와 同等하게 하기 위해서 對策을 모색해야 겠음.

李圭福委員; 甲類建設技術者 免許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優秀한 建築物이 設計없이 나올수 없으며 技術向上은 될수 있다. 問題는 合心하여 좋은 案을 만드려 밀고 나가야 함이 좋겠음(여러 委員들의 方案 提示가 있었음)

決議; 建議書를 제출하되 建築士는 建築分野에 있어서 最高技術者이며 工事監理로서 甲類建設技術者를 指示監督함으로서 甲類建設技術者 免許를 建設業法第1條 3項에 依據 받아야 한다는 內容으로 提出하자는 內容으로 推進委員을 選定 모든 支援을 하도록 함.

2) 工事監理

建築士는 設計만으로 끝남으로서 質的低下와 建築士의 收入을 增加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建築士가 工事監理를 할수 있게 하여 建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하고 建築士의 權益을 옹호하자는 것으로 建築士가 設計한 建物을 工事監理를 할수 있도록 하느냐 안하느냐의 問題點을 論해야 겠습니다.

金東珪委員; 自己가 設計한 것을 監理하는 것을 原則의으로 提案하여 建築主가 委嘱을 안 하니까 서울市廳과 協議하여 建築士의 部署가 없는 것은 竣工檢查를 못하도록하는 方法을 강구해야 겠음.

李明煥委員; 建築을 專攻함은 設計를 하여 社會에 기여함이 되어야 함으로 誠實히 設計를 하고 監理하여 忠實히 設計대로 이행하면 社會的 責任을 다한 것이다, 委員長; 監理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李泰魯委員; 建物의 大小를 區分함이 없이 全體를 監理하고 그려므로 設計事務所도 企業化 할수 있게 하고 외국과의 技術交流와 自體技術 發展을 기할 수 있음.

姜理事; 設計를 한 本人이 監理를 한다로 決定합시다. 그리고 對策委員을 選任 委任 합시다.

委員長; 그럼 姜理事의 提案을 理事會에 提出하기로 하겠습니다.

3) 其他

倫理委員會의 機能 強化토록 方案을 강구 합.